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20. 12. 31.> (앞 쪽)

긴급자동차지정증

지정번호					
①성 명		②생년월일			
③주 소					
④자동차종류		⑤차 명		⑥형 식	
⑦자동차등록 번 호		⑧원 동 기 번 호		⑨용 도	

위 자동차를 「도로교통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(시·도경찰청장) 인

2106-140일(1) 130㎜×95㎜

85. 1.28 승인 (인쇄용지(특급) 70g/㎡)

(뒷 쪽)

주 의 사 항

1. 지정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언제나 이 증을 지녀야 합니다.
2. 이 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4항에 따라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.
3. 이 증은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.
4. 지정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